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범위를 특정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에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

수정주요내용

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특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나.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안 제69조제1호 단서).

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에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3조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결격사유) ----------.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1. ~ 6의2. (개정안과 같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	6의3. (개정안과 같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6의4. ----------	6의4. ----------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7.·8. (개정안과 같음)
제69조(당연퇴직) 공	제69조(당연퇴직) (현	제69조(당연퇴직) ---

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	행과 같음)	----------. 1. ----------

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2. (생 략)	부 칙 <신 설>	--.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2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 의 자 : 주호영・고동진・강대식
권영세・서명옥・조은희
박상웅・박준태・김장겸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특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나.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안 제69조제1호 단서).

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에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3조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 각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 또는”을 “성폭력범죄,”로, “성범죄”를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69조제1호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3조(결격사유)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성폭력범죄,----------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9조(당연퇴직) ----------.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	1. ----------. ----------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2. (생 략)	2. (현행과 같음)